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22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8.

발 의 자:정동만·전봉민·김상훈

강기윤 · 조경태 · 정운천

이종성 · 최승재 · 윤창현

강민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최근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.

특히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나, 현행법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 한정하여 학자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.

이에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 및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인 대학생을 추가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(안 제36조및 제49조의4).

법률 제 호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6조 중 "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"을 "다음 각 호 의"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
- 2.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
- 3.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인 대학생
- 4. 그 밖에 국가유공자, 다문화 가족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

제49조의4 중 "수급자"를 "수급자,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)	제36조(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)
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	다음 각 호의
<u>으로 어려운</u> 대학생에 대한 학	
자금 무상지급(제2조제1호나목	
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)을	
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	
정(이하 "장학금계정"이라 한	
다)을 설치한다.	
<u><신 설></u>	1.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
<u><신 설></u>	2.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생 3.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인 대학생 4. 그 밖에 국가유공자, 다문화 가족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대학생
제49조의4(우선적 학자금 지원)	제49조의4(우선적 학자금 지원) -
재단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	
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	
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	
료급여의 <u>수급자</u> 등 대통령령	<u>수급자, 출산 또는 입양으</u>
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	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

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	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
있다.	
	<u>.</u>